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안내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7. 운송장비제조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5.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특정공사 신고대상 기준

- 생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 장비 [별표 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향타기·향발기 또는 향타향발기(압입식 향타향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방법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내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환경위생과에 접수

*공사개요, 공사장위치도,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밖의 저감대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벌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2의3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고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사용 중지	